

학교 방역지침 개정내용 안내

□ 적용 시기 : 4.18.(월) ~ 4.30.(토)

□ 개정 내용

- ① (학생 선제검사) 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,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
- ② (접촉자 관리) 확진자 발생 시 “같은 반 학생 전체”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“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”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

< 4월 유·초·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>

적용시기	~4.17	4.18~4.30
선제검사 (권고)	▶ 주 2회	▶ 주 1회
자체조사 진단검사 (권고)	▶ 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전체”	▶ 확진자의 같은 반 등 “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”
	▶ 3회(선제검사 2회 포함) 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	▶ 2회(선제검사 1회 포함) ※ 고위험 기저질환자 :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, 신속항원검사 1회
	※ 그 외 학생 :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	※ 유증상자 :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

- ③ (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)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*(4.11.~)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‘양성’ 확진자 인정 조치(~5.13까지 연장)